

2023년도 제1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11.(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한승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59)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33건(안건번호 제2023-88362호~8909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88362호~88363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중인 사안으로, 주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불법복제물임을 확정할 수 없는 점, 향후 피해자 등의 소명에 따라 불법성이 확인된 후 시정권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88364호~88367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8368호~88402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8403호~88410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8411호~88426호는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1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5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E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6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88362호~8836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스마트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중인 게시물을 신고한 사안임. 해당 민원인은 보호원을 통해 신고한 다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동일한 게시물을 신고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안전번호 제2023-88362호는 리딤코드를 판매하는 사안으로 재 판매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합법시장의 대체 가능성 또는 위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의견으로 검토하였으며, 안전번호 제2023-88363호는 제품키 판매 행위가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A 위원: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보호원에 바로 들어오는가?
- 김준근 주임: 1~2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국민신문고 건은 전부 민원건으로 분류를 하는가?
- 김준근 주임: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2건의 게시자는 동일한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인지 확정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로는 불법복제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김준근 주임: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음.

- A 위원: 그러면 추가 증거가 필요한데, 사실 관계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는 없음. 안전번호 제2023-88363호는 검토의견이 가결인 이유가 무엇인가?
- 김준근 주임: 기존에 심의위원회는 제품키, 라이선스 판매 건에 대해서는 가결을 하였기에 검토의견을 가결로 올렸음. 다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4분과에서는 시정권고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위에 회부하였음.
- A 위원: 행정적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게시자가 정당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배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제도에 있어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문제임.
- 이숙형 부장: 검토보고서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음.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 구입하여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임.
- A 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불법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임.
- 이숙형 부장: 대법원 사례는 ♣♣♣♣♣♣♣♣에서 ◎◎◎같은 프로그램은 중국 등에서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중국 등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쇼핑몰에 관한 것임. 4분과에 문제 삼은 것은 ♥♥♥♥♥를 중국 내에서 구입하여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

위가 설령 약관 위반이라고 해도, 약관 위반 사안까지 시정권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도 비슷한 사안으로 보임.

- A 위원: 중국에서 구매한 것을 한국에서 파는 순간 약관 위반으로 불법복제 물이 될 것임.
- 이숙형 부장: 4분과에서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전체위원회에 회부를 하였고 곧 개최될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심의대상 게시물 중 안전번호 제2 023-88362호는 제품키가 아닌 리덤코드라는 것을 판매하는 사안으로, 중국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 게시자가 구한 상품권을 다시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아서 검토의견을 부결로 올렸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됨. 불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 관계가 더 확인 되어야 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관 즉 계약을 위반한 불법 복제물인 상태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임. 지금 상황에서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명백히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지 의문임.
- E 위원: 대부분의 리덤코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어 ♣♣♣♣에서 아시아판 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것임. 리덤코드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판매자들이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그게 법에 어긋나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함.
- A 위원: 리덤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그걸 산사람한테 옛날에 소프트웨어 시디를 판매할 때 그 시디를 주는 상태가 아니고 권리가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규약에 대한 코드에 해당하는 것임. 액티베이팅을 위해 필요한 제품키 비슷한 것임. 이 리덤코드가 정당한 권리자의 것인지,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

- 이숙형 부장: 리덤코드를 정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 리덤코드를 받은 후가 될 수도 있으며 만약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된다는 약관이 있으면 내가 구입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E 위원: ◆◆◆◆◆◆ 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 드리면 중국에서 PC 구매하는데 포함되는 라이선스 건 몇천~몇만개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구입을 해서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가 있음. 미국이나 중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면 불법임. 그런데 리덤코드는 의미가 조금 다름.
- A 위원: 다르거나 맞다는 것은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함.
- E 위원: 요즘 리덤코드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약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함.
- A 위원: 이 리덤코드에 관한 문제는 권리자가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불법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는 없음.
- E 위원: 재판매가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 약관을 봐야 할 것 같음.
- A 위원: 재판매의 허용여부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일

일이 약관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E 위원: 안전번호 제2023-88363호 관련해서는, ■■■■■ 프로그램을 1년 라이선스 구독권을 구매한 다음 남한테 넘겨주는 등 이런 판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위원: 둘 다 가결 혹은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정품 여부가 온라인을 통해 연동이 되어 있어 권리자가 필요한 경우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저작권자 즉 소프트웨어 회사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88362호~88363호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D 위원: 홍지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저도 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8362호~88363호는 주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불법복제물임을 확정할 수 없는 점, 향후 피해자 등의 소명에 따라 불법성이 확인된 후 시정권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8364호~8836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88364호~8836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8364호~8836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8368호~8840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88368호~8840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8368호~8840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8403호~8841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88403호~88410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8403호~8841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88411호~8842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88411호~8842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88411호~8842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88427호~8909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일반 영상, 출판/어문, 방송, 영화, 만화/웹툰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마당이 있는 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88451호
(‘플래시’)는 2023.06.19.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60포인트에 판매
중임.

(‘청담국제고등학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88860호
호(‘택배기사’)는 2023.05.31.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270포인트에
판매중임.

(‘데이브 더 다이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88971호
(‘데이브 더 다이버’)는 2023.06.23. 발매한 PC게임으로 웹하드에서 940포인
트에 판매중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3-88427호~8909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
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88427호~89094호 중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
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88362호~88363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88364호~88367호, 제2023-88368

호~88402호, 제2023-88403호~88410호, 제2023-88411호~88426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3-88427호~8909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1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한승원

위원 홍지만